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34
----------	------

2024년 2월 2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1일, 문성호 의원
-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 상정일자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성호 의원)

1. 제안이유

- 수학여행은 학생의 독립심 및 협동심을 기르고 농어촌 등 방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순기능을 지니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어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그러나, 최근 가정에서 수업일수의 일부를 현장체험학습으로 활용하여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학여행이 대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정에서 국내외 여행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참여의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수학여행 활성화와 청소년 봉사단체 지원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 간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활성화, 청소년 봉사단체 지원 등 지원 근거 명시함(안 제4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1일 문성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534호로 발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교외체험 학습을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의 체험 학습은 전면 중단되었으나, 2022년부터 코로나 규제가 점진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다시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 계획 현황(2016~2023)

학교급 학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특수, 각종 등)	계
2016	453	322	287	20	1,082
2017	415	326	279	23	1,043
2018	337	331	270	26	964
2019	234	322	283	31	870
2020	코로나19로 인한 전체학교 미 실시				
2021					
2022*	86	147	185	14	432
2023	79	246	261	15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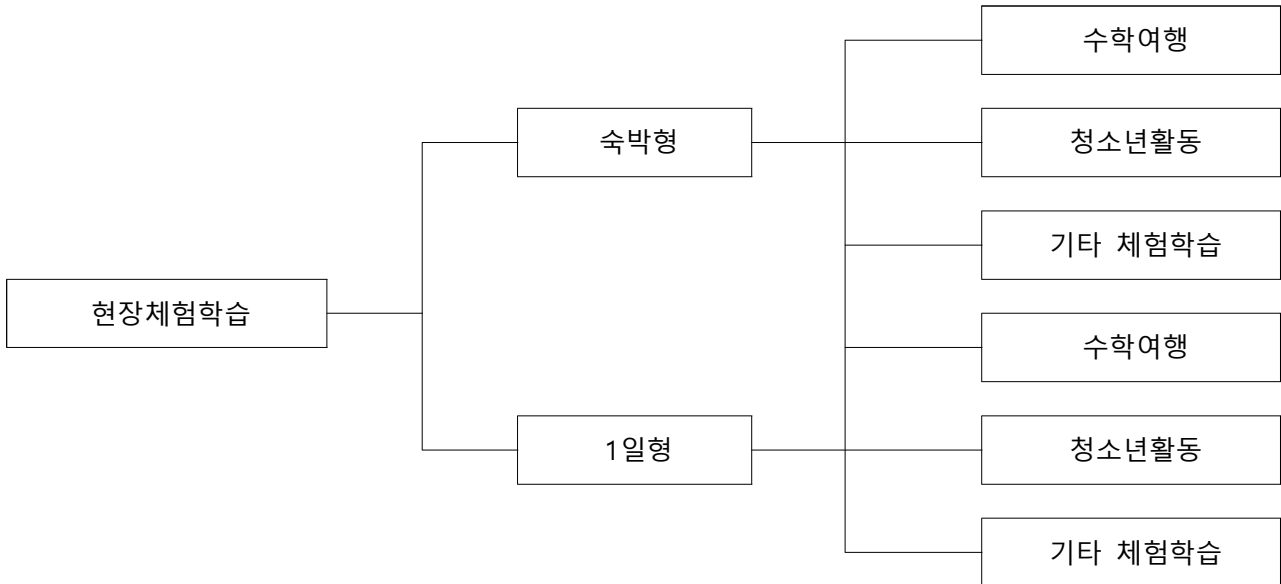
* 출처: 서울시교육청

* 2022년은 상반기부터 소규모 운영 등 다시 재개되었으나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계획한 학교 중 상당수가 취소(학부모 동의율 부족 등)

- 이와 같은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군)외 창의적 체험활동¹⁾의 학교 밖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의 현장체험 학습은 체험유형에 따라 수학여행, 청소년활동 및 기타 체험학습으로 구분·운영되고 있습니다.

1)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부 교과과정으로 자율·자치활동 영역, 동아리 활동 영역, 진로 활동 영역으로 구분됨.

[표-2]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 이러한 현장체험학습은 그동안 통제 위주였던 대규모 관광형 수학여행 및 형식적인 소집단 관람형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24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를 통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적 활동중심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²⁾
- 그러나 위와 같은 현장체험학습의 취지와 교육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현장체험학습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춘 학교차원의 대응이 용이하지 않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³⁾.

2) 「2024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서울시교육청, p.2.~p.4. 내용 참조

3) 악성민원 시한폭탄 된 현장체험학습, 한국교육신문, 2023.10.10.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의 지역 및 지역 프로그램 연계에 대한 책무와 지원계획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활동 중심의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 안 제4조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2항은 교육감에게 지역별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중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로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⁴⁾
- 이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체험중심 교육 실시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과 체험 중심 교육으로 확대되었는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발굴 및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증진이 필요한 바,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연계시켜주는

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별책1]). 교육부, 2015.12.1.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안 제4조의 규정은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지원과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연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안내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이는 국가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교육부 개정 교육과정 대조표

구분	창의적 체험활동		
	2009 개정	2015 개정	2022 개정
대상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총 론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및 강화 - 주당 2시간→4시간 이상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1시간 증배, '안전한 생활' 신설 -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중심 교육으로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초기적응 활동 개선 -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개선(3개) -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출처: 교육부 주요내용 및 보도자료

2)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 안 제5조는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2 개정 교과과정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치활동'을 새롭게 추가하여([표-2] 개정 교육과정 대조표 참조) 학교에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 활동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4] 교육부 2022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예시)'

영역	활동	예시 활동
자율·자치 활동	자율활동	· 주제 탐구 활동: 개인 연구, 소집단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 · 적응 및 개척 활동: 입학 초기 적응, 학교 이해, 정서 지원, 관계 형성 등 ·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개인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공동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등
	자치활동	· 기본생활습관 형성 활동: 자기 관리 활동, 환경·생태의식 함양 활동, 생명존중 의식 함양 활동, 민주시민 의식 함양 활동 등 · 관계 형성 및 소통 활동: 사제동행, 토의·토론, 협력적 놀이 등 · 공동체 자치활동: 학급·학년·학교 등 공동체 중심의 자치활동, <u>지역 사회 연계 자치활동</u> 등

- 또한 최근 지역별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서 공공기관·기업, 해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⁵⁾ 학교급별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현장학습처 개발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 제5조는 이처럼 새롭게 추가된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과 교육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발굴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917, 2024. 2. 16.).

5) "다양한 현장학습 통해 학습효과 상승", 경남매일, 2024.02.13., 세종시교육청 유네스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공동 개최, 뉴스핌, 23.12.21., 의성군 작은학교 단초초 정선 스키장 체험학습 실시, 경북신문, 2023.12.12., 예산 임성중, 어깨동무활동 프로그램 일환 스포츠현장체험학습 실시, 충청일보, 2023.11.20., 한국호텔관광고, 두바이로 현장 체험학습 다녀와, 충청일보, 2023.11.9., 경남교육청, 통영관광개발공사와 체험학습 협약, 뉴시스, 23.10.14.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교육감의 책무)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교육감은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u></p>
<p>제5조(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 ① (생략)</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 (생략)</p>	<p>제5조(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